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1. 10 선고 2023나30032 판결 [보증채무금]

---

### 재판경과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1. 10 선고 2023나30032 판결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2. 15 선고 2022가단115621 판결

### 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3. 10. 20.

판결선고 2023. 11. 10.

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가단115621 판결

### 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### 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# 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## 이 유

### 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.

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판결 제2면 제5 내지 6행의 “D”을 “D은”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이동욱, 판사 위수현, 판사 안민주